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위원회규정 제12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도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도 교육청 학무국장'을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으로 한다.

제4조중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중 3인의'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중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를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한다.

제9조제2항중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를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5. 8. 22.

제안자 : 권영판의원의외 7인

## 1. 수정이유

-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각종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에 있어 관례시 되어오고 있는 도지사들 위원장으로 하던것을 행정부지사로 자구수정함으로써 보다 충실하고 내실있는 위원회운영을 기대하고자 함과
- 위원회 임기에 있어 4년과 2년으로 차등임기제를 실시함으로써 위원 상호간의 위화감 조성과 상대적 비적극성이 유발될 수 있는바 이에대한 제한적 규정을 삭제하고 동등한 임기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2. 수정주요골자

- 자구수정 : “도지사” → “행정부지사” (안 제2조제2항)
- 자구삭제 : “4년으로 하되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중 3인의 임기는” (안제4조)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항 중 “도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안 제4조 중 “4년으로하되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중 3인의 임기는”을 삭제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위원회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2항- - - - - - - - - - - - - - - - - - - -</p>	<p>제1조 (목적) -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2항- - - - - - - - - - - - - - - - - - - -</p>
<p>제2조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내무국장, 도 교육청 학무국장 및 지방문화재위원회위원장과 문화예술에 이해가 깊은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제2조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도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 - - - - - - - - - - -</p>	<p>제2조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행정부지사가 - - - - - - - - - - ③ - - - 도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 - - - - - - - - - - -</p>
<p>제4조 (위원회의 임기)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최초에 위촉되는 위원중 3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제4조 (위원회의 임기) (현행과 같음)</p>	<p>제4조 (위원회의 임기)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제6조 (회의 개최 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생략)</p>	<p>제6조 (회의 개최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정기회의는 년 1회,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 (회의 개최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정기회의는 년 1회,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계장이 된다 ③ (생략)</p>	<p>제9조 (간사와 서기) ①(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 (간사와 서기) ①(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p>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위원회규정 제12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3항중 '도 교육청 학무국장'을 '도 교육청 중등교육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를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한다.

제9조제2항중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를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위원회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위원은 <u>내무국장, 도 교육청 학무국장 및 지방문화재위원회위원장과 문화예술에 이해가 깊은 자중에서</u>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제6조 (회의개최 등) ① (생략)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u>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u> 개최한다. ③ (생략)</p> <p>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생략) ②간사는 <u>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계장이 된다</u> ③ (생략)</p>	<p>제1조 (목적) - - <u>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2항</u> - - - - -</p> <p>제2조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도 교육청 중등교육국장</u> - - - - -</p> <p>제6조 (회의개최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u>정기회의는 년 1회,</u> - -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 (간사와 서기) ①(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u>문화체육과장이</u> - - - - - ③ (현행과 같음)</p>